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Risk Management Group)은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미국 정부의 통상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RMG의 자세한 소개는 본 이슈리포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의의 및 배경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범위
- 수입 수수료 부과 및 수출 환급 제도
-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관련 이슈

II. 대륙아주 코멘트

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의 및 배경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 함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기업의 탄소감축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탄소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준치보다 많이 감축된 탄소량에 대하여는 보조금처럼 환급하거나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주는 조절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중임에도 불가하고, 소극적인 일부 국가나 기업들에 의하여 탄소감축노력이 상쇄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EU는 2021년 7월 집행위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제안하였으며, 2022년 6월에는 EU 의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 탄소거래제도 개선을 포함한 탄소정책 종합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EU 및 EU 각료이사회는 연내 입법 목표로 법안조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3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등의 보고의무만 부여될 뿐 실제 비용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바이든 행정부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거래시스템 도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공약한 바 있으며, 필요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유사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상, 하원에는 철강, 철, 시멘트, 알루미늄,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내용의 '청정경쟁법(S.4355 Clean Competition Act)' 및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H.R.4534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이 각 발의되어 입법 대기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1)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서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2) 미국 탄소규제로 인해 발생한 미국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을 상쇄하고, 3)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하여 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 그 주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범위

EU는 당초에 EU 집행위가 제안했던 5개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외에도, 유럽 의회는 유기 화학, 폴리머, 수소, 암모니아 배출 및 간접배출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에 대하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동시에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산업군인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외에 기타 품목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조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 및 천연가스 등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 또는 중간재에 포함된 배출(upstream emission)까지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하여는 논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수수료 부과 및 수출 환급 제도

일반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내재한 탄소량(톤 단위)에 비례하여 관세 성격을 가지는 수수료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탄소거래 가격(10월 21일 기준 톤당 68유로)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

니다. 현재 미국 내의 전국적인 탄소거래 가격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수료 책정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하여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EU 수출기업들은 탄소거래 가격제가 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므로, 저탄소규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환급하는 제도인 '수출 환급 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환급 제도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포함될지 또한 미국 기업들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미국 의회는 1) 유사한 수준의 탄소 규제 정책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및 2) 저개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관련 이슈

만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미국의 탄소 가격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외국 기업에게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와 외국기업 차별을 금지하는 WTO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경우 모든 WTO 회원국을 동등하게 우대해야 하는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 조항을 위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타 집행의 어려움 및 높은 행정비용에 따른 우려,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발동의 가능성, 또한 미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 전망 등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에 앞선 검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I. 대륙아주 코멘트

미국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의 탄소국경세가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고, 탄소가격이 톤당 30유로(약 4만원)로 설정되며,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이 376만톤일 경우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의 경우, 연간 1억 3,500만 달러(약 1,5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를 관세율로 따지면 약 2.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대기업 뿐 아니라, 이러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간접수출까지 감안하면 탄소국경세의 타격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탄소국경세가 복합재나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도 직접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대응 비용과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최다배출기업이자 최다전력소비기업인 삼성전자가 'RE100[1]'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발표하는 등 '탄소감축'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키워드이며,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는 ESG와 관련하여, 향후 탄소감축 방안 마련 및 전략 수립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정책 진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

1 기존의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필요한 전력을 전량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RMG 소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RMG(Risk Management Group, 위기관리 대응 그룹)'를 발족하였습니다.

고객이 국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각종 리스크를 방지,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것이 대륙아주 RMG의 목표입니다.

대륙아주 RMG는 거래 전의 조사적 실사, 전략적 리서치, 현장 조사와 분쟁 가능성 검토, 모니터링, 소송 진행과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RMG는 고객이 국내외에서 직면할 수 있는 글로벌 역학관계 변화나 특정 국가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정치, 규제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창의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륙아주 RMG는 각 분야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물론, 전직 검찰, 경찰, 정치권, 행정부의 고위 인사 및 군 장성 및 미군 정보 장교, 국가 안보 권위자 및 대북 전문가, 조사 업무에 특화된 인사,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 금융 및 언론계 전문가 등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윤수 변호사(그룹장)
위기관리대응, 형사
E choiys@draju.com
T 02-3016-5217



차동언 변호사
형사, 공정거래, 기업승계
E decha@draju.com
T 02-3016-8720



임성훈 외국변호사
국제, 위기관리대응
E imsh@draju.com
T 02-3016-5216



김경 외국변호사
국제, 위기관리대응
E kyeongckim@draju.com
T 02-3016-5338



김승진 변호사
인사/노무, 국제거래, 국제노동
E sjkim2@draju.com
T 02-3016-5214



오영호 변호사
기업, 금융 및 구조조정
E yhoh@draju.com
T 02-3016-5326



이관희 고문
위기관리대응, 북한, 국제
E steve.lee@draju.com
T 02-3016-5229



박진형 고문
위기관리대응, 북한, 국제
E parkjh@draju.com
T 02-3016-5329